

상업용음반 보상금 관리수수료 규정 개정안 신규 대비표

구 규정	개정안	개정 사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상업용음반 방송보상금 관리수수료 규정</p> <p>제3조(관리수수료의 공제시기 및 공제율) 제2조에 따라 결정한 관리수수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보상금 징수 시 40%, 분배 시 60%로 각각 구분하여 공제한다. 다만, 분배되지 아니하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분배에 따른 관리수수료를 공제하지 아니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상업용음반 방송보상금 관리수수료 규정</p> <p>제3조(관리수수료의 공제시기 및 공제율) 제2조에 따라 결정한 관리수수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보상금 징수 시 60%, 분배 시 40%로 각각 구분하여 공제한다. 다만, 분배되지 아니하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분배에 따른 관리수수료를 공제하지 아니한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공제시기 및 공제율을 변경하고자 함.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상업용음반 공연보상금 관리수수료 규정</p> <p>제3조(관리수수료의 공제시기 및 공제율) 제2조에 따라 결정한 관리수수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보상금 징수 시 40%, 분배 시 60%로 각각 구분하여 공제한다. 다만, 분배되지 아니하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분배에 따른 관리수수료를 공제하지 아니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상업용음반 공연보상금 관리수수료 규정</p> <p>제3조(관리수수료의 공제시기 및 공제율) 제2조에 따라 결정한 관리수수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보상금 징수 시 60%, 분배 시 40%로 각각 구분하여 공제한다. 다만, 분배되지 아니하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분배에 따른 관리수수료를 공제하지 아니한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공제시기 및 공제율을 변경하고자 함.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상업용음반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관리수수료 규정</p> <p>제3조(관리수수료의 공제시기 및 공제율) 제2조에 따라 결정한 관리수수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보상금 징수 시 40%, 분배 시 60%로 각각 구분하여 공제한다. 다만, 분배되지 아니하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분배에 따른 관리수수료를 공제하지 아니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상업용음반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관리수수료 규정</p> <p>제3조(관리수수료의 공제시기 및 공제율) 제2조에 따라 결정한 관리수수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보상금 징수 시 60%, 분배 시 40%로 각각 구분하여 공제한다. 다만, 분배되지 아니하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분배에 따른 관리수수료를 공제하지 아니한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공제시기 및 공제율을 변경하고자 함.